

KIEP

# 오늘의 世界經濟

World Economy Update

제 04 - 17 호 / 2004년 7월 21 일 발간

## DDA 농업협상 초안 평가 및 쌀 협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

작성자: 이창수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 
박지현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위원  
【cslee@kiep.go.kr, ☎ 3460-1065】  
【jhpark@kiep.go.kr, ☎ 3460-1136】

### 主要內容

- 지난 7월 16일 WTO 오시마(Oshima) 일반이사회 의장 및 수파차이(Supachai) 사무총장은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의 기본골격(framework) 초안을 발표하였음.
  - 동 초안은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협상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, 동 초안은 7월 21~23일 농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7월 27~29일 일반이사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예정임.
- 관세가 높은 품목이나 국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관세와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원칙 확립으로 고관세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
  - 한국, 일본 등 G10이 반대해 온 농산물 관세상한 설정을 추가 논의대상으로 돌린 점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.
- 특별품목 등 개도국에는 상당한 우대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향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핵심 관건으로 부상함.
- 오시마 의장초안의 특별품목 인정과 관세상한에 대한 유보적 태도는 쌀 관세화의 위험요인을 일부 제거함으로써 쌀 협상에 일부 긍정적 역할을 시사함.
  - 의장초안에 의하면 특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, 구간별 관세감축에서 낮은 감축률을 적용받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또한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(TRQ) 증량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세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됨.

對外經濟政策研究院

## 1. 초안의 배경

### □ DDA(도하개발 아젠다) 농업협상 초안 마련

- 오시마 쇼타로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DDA 협상과 관련한 세 부원칙의 틀을 정한 농산물협상 초안을 작성
- 오시마 초안에 대해 7월 21~23일 농업위원회 등을 통한 각국의 입장 조율을 거쳐 오는 27~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 이사회에서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
- 정부는 동 DDA 협상초안을 지난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공식 의제로 보고하였으며, WTO 일반이사회에 앞서 정부측 대응 방침을 확정할 예정임.

### □ 배경

- 2003년 3월 세부원칙 수립에 실패,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의 합의도출 실패이후 금년 5월 EU는 국내보조 및 시장접근에서, 또한 수출신용(및 국영무역회사)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경우 수출보조 완전철폐 협상 용의가 있다고 표명함으로써 DDA 협상의 모멘텀 확보
  - o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 분야에서 상당수준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장접근 분야(관세감축공식, 관세상한, 개도국우대)에서 이견해소를 위한 협상 지속.
  - o 우리나라는 그간 수입국그룹(G-10) 및 SP그룹(G-33)과 공조하면서 특별품목(SP) 인정 및 자기선언 방식, 관세상한 반대, 민감품목에 대한 TRQ 증량 반대, 국내보조의 점진적 감축 등을 추진
- 두 가지 쟁점
- o EU가 수출보조 철폐의 조건으로 제시한 수출신용(미국) 및 국영무역회사(호주, 캐나다) 관련 보조부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철폐할 것인가?

○ 선진국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신축성을 어느 정도 제공할 것인가?

- 기본골격(framework) 합의에 실패할 경우 DDA 협상이 붕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농업협상 초안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G90(케냐, 모리셔스, 나이지리아)은 면화보조금 철폐, 농산 및 비농산물에서의 관세 감축면제, 싱가포르 이슈 논의대상 제외 등을 요구하며 DDA 협상의 기본을 위협

## 2. 초안 내용

### □ 시장접근 관련 주요 내용

- 관세감축시 고율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되 일정범위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물량(TRQ) 증량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

- 관세감축: 구간별 차등감축방식(tiered formula)을 채택하고, 구체적 구간선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

○ 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(deeper cuts in higher tariffs)

○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인정

○ 관세상한은 구간공식에서 민감품목의 별도취급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평가 필요

- 민감품목(sensitive products)

○ 선진국의 민감품목 처리결과에 따라 개도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우대조건 부여

○ 선진국의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의 특별한 의무와 시장접근까지 감안한 세 분야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민감품목 취급에 대한 핵심적 기초 마련

○ 현재 TRQ 품목수를 민감품목의 최대 근사치로 간주

○ 민감품목은 품목별로 TRQ 증량과 관세감축의 연계를 통해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. TRQ의 증량기준은 추후 결정

- TRQ (In-quota) 관세 및 TRQ관리 등

- 현행 TRQ의 관리개선과 TRQ 관세율의 감축 및 철폐
- 경사관세는 합의되는 공식을 적용
- 특별긴급관세(SSG)문제는 추후협상에서 논의

- 개도국우대(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)

- 각 관세구간의 관세감축에서 낮은 감축률 적용
- 민감품목의 선정 및 처리기준은 선진국의 취급방식을 감안하여 결정
- 개도국은 추후 협상에서 합의될 조건에 따라 일정한 수의 특별품목을 지정할 신축성을 가짐.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TRQ 증량 의무를 면제하고 합의될 조건에 따라 개도국특별긴급관세(SSM) 설정 가능

<표 1> 시장접근 안에 대한 주요 내용 비교

구분	하빈슨 의장안	데르베즈 의장안	오시마 의장안
관세감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구간별 감축방식</li> <li>· 선진국 3단계 (15%이하, 15~90%, 90% 초과: 평균 40~60%, 최소 25~45% 감축)</li> <li>· 개도국 4단계 (20% 이하, 20~60%, 60~120%, 120% 초과: 평균 25~40%, 최소 15~30% 감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 그룹으로 나눈 혼합방식</li> <li>· 선진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i) 농산물 전체의 [ ]%에 대해서 평균 [ ]%, 최소 [ ]% 감축</li> <li>(ii) 농산물 전체의 [ ]%에 대해서 [ ]를 계수로 한 스위스 공식 적용</li> <li>(iii) 나머지 농산물: 무세화</li> </ul> </li> <li>· 개도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i) 농산물 전체의 [ ]%에 대해서 평균 [ ]%, 최소 [ ]% 감축</li> <li>(ii) 농산물 전체의 [ ]%에 대해서 [ ]를 계수로 한 스위스 공식 적용</li> <li>(iii) 나머지 농산물은 0~5%로 양허</li> </ul> </li> <li>- 관세상한을 설정하거나, R/O 방식을 통해 TRQ 증량 등 추가적 시장접근 확대 보장(단, 일부 N TC품목은 관세상한적용 배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세 구간별 감축방식 (tiered formula)</li> <li>· 관세구간의 수, 범위, 관세감축방식 등은 추후 협상</li> <li>· 관세상한은 추후 평가 필요</li> </ul>
민감품목/특별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진국은 해당없음</li> <li>- 개도국(특별품목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평균 10%, 최소 5%감축, TRQ 증량면제</li> <li>· 대상품목은 스스로 선택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진국은 해당없음</li> <li>- 개도국(특별품목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최소 [ ]% 선형감축, TRQ 증량 면제</li> <li>단, 현행 양허관세가 [ ]% 이하인 경우 관세감축의무 면제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진국(민감품목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TRQ 증량과 관세감축을 통한 조화</li> <li>· TRQ증량은 차기협상에서 결정</li> </ul> </li> <li>- 개도국(특별품목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품목선정 조건은 추후 협의</li> <li>· TRQ 증량 면제</li> </ul> </li> </ul>
TRQ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진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999~2001년 평균소비량의 10% 미만 품목은 10%까지 증가</li> <li>- 품목간 신축성 부여(8~12%)</li> </ul> </li> <li>- 개도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999~2001년평균소비량의 6.6% 미만 품목은 6.6%까지 증가</li> <li>· 품목간 신축성 부여(5~8%)</li> <li>· 특별품목은 증량 면제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In-quota세율 [ ]% 감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행 TRQ 관리 개선</li> <li>- In-quota 세율 감축</li> </ul>
SSG/SSM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SSG: DDA 이행종료후 철폐</li> <li>- SSM: 반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SSG: 미합의</li> <li>- SSM: 반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상품목, 적용조건은 추후 협상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SSG: 추후 협의</li> <li>- SSM: 반영</li> </ul>

## □ 국내보조 관련 주요 내용

### - 기본원칙

- 개도국우대: 긴 이행기간, 낮은 감축률, 개도국우대 국내보조 유지 등
- 보조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더 많은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함
- 감축보조(AMS, 보조총액측정치), 최소허용보조(de-minimis), 블루박스(생산제한 직접지불) 등 무역왜곡보조의 총액 및 개별 감축

### -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

- 구간공식(tiered formula)에 따라 AMS, 최소허용보조(de-minimis), 블루박스의 총액 감축(최소감축률 제시)

### - 감축보조(AMS)

- 구간별 감축공식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보조를 가진 국가는 더 많이 감축. 품목별 상한 설정 및 특정 품목의 경우 상한수준 감축

### - 최소허용보조(de-minimis): [ ]% 감축

- 블루박스(생산제한 직접지불)는 농정개혁의 수단으로서 블루박스의 역할을 인정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도입할 수 있음.

-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; △고정된 면적과 단수에 기초할 것, 또는 △고정된 기준년도 총 생산액의 85% 이하에 대한 직접지불일 것, 또는 △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한 직접지불일 것

- 현재의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; △고정된 면적과 단수에 기초할 것, 그리고 △고정된 기준년도 총 생산액의 85% 이하에 대한 지불일 것, 그리고 △생산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.

- 허용보조(그린박스)

- o 생산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도록 요건을 재검토하되 NTC의 적절한 반영

<표 2> 국내보조 안에 대한 주요 내용 비교

구분	하빈슨 의장안	테르베즈 의장안	오시마 의장안
AMS	- 선진국: 5년간 60% 감축 - 개도국: 10년간 40% 감축	- 최종양허수준을 기준으로 [ ]%~[ ]% 감축 - 품목특정 AMS 상한 도입 · [ ]년 동안 평균 수준	- 구간별 감축(tiered formula)공식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보조 더 많이 감축 - 품목특정 AMS 감축 및 상한 도입
블루박스	- 선진국 · 5년간 50% 감축하거나 AMS에 포함시켜 감축 - 개도국 · 10년간 33% 감축하거나 이행 5차 년도에 AMS에 포함시켜 감축	- 변형된 형태의 블루박스 도입 · 2000~02년 농업총생산액의 5% 수준으로 상한설정 후 추가 감축	- 블루박스 요건 강화 - 상한설정
최소허용보조	- 선진국: 5년간 매년 0.5%씩 감축 - 개도국: 현행 유지	- 선진국: [ ]% 감축 - 개도국: 감축면제	- 선진국: [ ]% 감축 - 개도국: 감축하되, 긴 이행기간, 낮은 감축률
허용보조	- 선진국 · 기본틀은 현행을 유지하되, 보조금 지급 요건 명확화 - 개도국 · 지급요건 완화 및 새로운 허용보조 추가 검토	- 기준에 대한 검토 · 생산 및 무역왜곡이 없거나 최소가 되는 허용보조 확립	- 생산에 미치는 무역왜곡적 영향이 없거나 최소화가 되도록 기준 재검토 - NTC 충분히 고려

□ 수출보조 관련 주요 내용

-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, 수출신용, 국영무역, 식량원조 등이 수출보조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
- 기본원칙: 합의된 시점까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 및 여타 수출지원 정책의 규율 강화
- 철폐의무: 합의된 시점까지 아래의 수출보조 철폐

- 양허된 수출보조
- 무역왜곡적 수출신용 철폐: 180일 이상의 상환기간을 가지거나 향후 수립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신용 및 수출신용 보증
- 수출국영무역의 무역왜곡적 관행 : 정부의 직·간접적인 재정지원 등
- 잉여농산물 처분 등 향후 마련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식량원조

- 개도국우대

- 긴 이행기간 및 낮은 감축률
-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유지
- 수출신용 규율 마련시 식량수수입국과 저개발국가의 식량안보 고려

<표 3> 수출경쟁 안에 대한 주요 내용 비교

구분	하빈슨 의장안	데르베즈 의장안	오시마 의장안
수출보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진국</li> <li>· 수출보조의 50% 해당품목은 전년도 대비 30% 감축하고 6년째 폐지, 여타품목은 전년대비 25% 감축하고 10년째 폐지</li> <li>- 개도국</li> <li>· 수출보조의 50% 해당품목은 전년도 대비 25% 감축하고 11년째 폐지, 여타품목은 전년대비 20% 감축하고 13년째 폐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도국 관심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: [ ]년에 걸쳐 철폐</li> <li>- 기타 품목: 철폐를 전제로 감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 및 여타 수출지원정책 규율 강화</li> <li>- 양허된 수출보조 철폐</li> </ul>
수출신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위배되는 경우 감축의무 부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도국 관심 품목에 대한 무역왜곡적 수출신용: [ ]년에 걸쳐 철폐</li> <li>- 무역왜곡적 수출신용 판단근거: 상환기간([ ]개월)</li> <li>- 기타 품목: 철폐를 전제로 감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역왜곡적 요소 철폐</li> <li>- 상환기간 180일 이상 또는 향후 수립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신용 철폐</li> </ul>
식량원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량원조가 우회적인 수출보조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범을 제정할 것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업적 거래를 저해해서는 안 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향후 수립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식량원조 철폐</li> </ul>
수출국영무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격차별행위, 정부의 재정적 특권 등 금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출국영무역에 의해 제공되는 수출보조에 대해 수출보조에 상응하는 감축의무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역왜곡적 관행 철폐</li> </ul>
개도국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도국우대 수출보조(농업협정 9.4조) 유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긴 이행기간 적용</li> <li>- 개도국우대 수출보조(농업협정 9.4조) 유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긴 이행기간 적용</li> <li>- 한시적으로 개도국우대 수출보조(농업협정 9.4조) 유지</li> </ul>

### 3. 전반적인 평가

□ 그간의 그룹별 차별성을 최소화하는 최소 수준(lowest common denominator)에서 세부원칙 기본골격(modality framework) 마련

- 미국은 칸쿤 각료회의 초안의 내용과 비교할 때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별로 없다고 평가

□ 관세 및 국내보조금이 어떻게 감축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음.

- 브라질, 인도 등 G20(개도국)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간별 관세감축 방식을 설정했으나 UR 공식을 사용할 것인지 스위스 공식을 사용할 것인지를 추후 협상으로 넘김.

- EU의 입장을 반영하여 선진국의 민감품목 인정을 허용했으나 브라질 및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 세부원칙 협상시 구체적 내용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됨.

- 국영무역에서의 규율(disciplines)에 대한 협상 신축성 유지

- 국내보조 감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블루박스를 통하여 2002년 제정된 경기보조 지불을 계속할 수 있게 됨.

□ 수출보조의 경우 환불기간이 6개월 이상인 수출 신용을 수출보조로 인정, 철폐대상으로 선정

- 미국의 수출신용 프로그램 대부분이 철폐될 것이나 EU 민감품목 인정과 TRQ 증량 반대의 협상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

- 기존 EU의 입장, 모든 수출신용 철폐가 EU의 수출보조 철폐의 조건이라는 입장에서 후퇴

□ 그러나 한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음 사항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.

-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적 신축성 인정
- 데르베즈안에서의 관세상한을 검토대상으로 전환

#### 4. 한국에의 영향

□ 관세가 높은 품목이나 국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관세와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원칙 확립으로 고관세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감축 불가피

-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민감품목(SP)을 운용할 수 있지만 관세감축과 함께 TRQ물량의 증량을 통해 시장개방 폭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임.
-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산물의 10%가 넘는 100%이상 고관세 농산물의 개방 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
- 국내 주식인 쌀을 포함해 마늘과 참깨·고추·감귤 등 수입제한 63개 품목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이 전면적인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할 것임.
-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관세상한 설정 여부에 대해 그 기능을 추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만 명시함으로써 관세상한선에 대한 논의를 봉합.
- 한국, 일본 등 G10이 반대해 온 농산물 관세상한 설정을 추가 논의대상으로 돌린 점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.
- 그러나 기본골격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세부원칙 협상에서 지속적인 위협요인으로 남을 것임.

□ 특별품목 등 개도국에는 상당한 우대 혜택을 부여

- 개도국에 대해서는 종전 초안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감축률과 긴 이

행기간 등 우대조치를 부여

- 특히 개도국은 수입 증량의무를 면제받는 특별품목을 일정 조건하에서 들 수 있으며 발동요건이 간편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(SSM) 운용
  -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향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핵심 관건으로 부상
- 추곡수매제 등 감축대상보조(앰버박스)를 철폐하고 직접지불 등 허용보조(그린 박스)를 확대하는 구조개편 불가피

## 5. 쌀 협상에의 영향 평가

- 오시마 의장초안의 특별품목 인정과 관세상한에 대한 유보적 태도는 쌀 관세화의 위험요인을 일부 제거함으로써 쌀 협상에 일부 긍정적 역할을 시사
- 의장초안에 의하면 특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, 구간별 관세감축에서 낮은 감축률을 적용 받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(TRQ) 증량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세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
  - 따라서 관세화유예를 위해 시장접근물량의 과도한 증량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동 초안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품목을 활용하여 쌀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면 TRQ 증량 없이도 고율관세로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개연성 증대.
  - 선진국으로 분류되더라도 관세상한 설정이 유보적인데다가 특별품목 만큼은 아니지만 고율관세로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민감품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.
  - 그러나 구체적인 감축률 등이 명시되지 않는 등 초안 자체의 불투명성으로 쌀 협상에서 관세화 또는 관세화유예 중 어느 것이 우리 쌀 산업에 유리한가를 가늠하기 어려움.

- 뿐만 아니라, 쌀 협상에 유리할지라도 모든 농작물에 적용되는 DDA협상의 성격상 쌀 협상을 위해 무리하게 초안 채택에 찬성할 수도 없음.

## 6. 정부의 대응방향 및 향후 전망

### □ 정부의 대응방향

- DDA 농업협상의 주요 목표를 개도국 지위 유지에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.
- 관세상한제도가 설정되지 않도록 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.

### - 민감품목의 신축성 확보

- 구간별 관세감축 방식 채택에 따라 향후 구간별 세부 협상에서 고율관세 품목을 수입국 민감품목으로 인정받아 관세인하 유예 특혜를 누리거나 점진적인 UR방식에 포함시키는 데 정부의 협상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.

-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, 근본적 시각에서 볼 때 농업개방이 필수불가결한 현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농업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임.

- 농업보조정책은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계획된 바와 같이 직불제 등 허용보조 중심으로 개편

### □ 전망

- 세부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으로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처럼 WTO 초안이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음.

- 또한 DDA 협상 파국을 막기 위해 초안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주요국 사정에 따라 세부쟁점에 대한 이견해소가 어려워 세부원칙에 대한 DDA 농업협상은 연내에 타결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됨.